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17호
의결년월일	2005. 7. 15 (제120회)

제안년월일 : 2005년 7월 13일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장

□ 제안이유

- 2005년도 총액인건비제 시범기관으로서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조정된 행정기구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조정함으로써,
- 상임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각종 의안과 청원심사 등 직무처리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부천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상임위원회 소관업무를 조정함.(안 제3조제2항)

《기획재정위원회》

- 사업소 기구의 과단위 조직 개편에 따라 삭제 : 농산지원사업소
- 사업소 기구의 소관 변경에 따라 반영 : 시립도서관

《행정복지위원회》

- 사업소 기구의 과단위 조직 개편에 따라 삭제 : 청소사업소, 녹지공원관리사업소

《건설교통위원회》

- 국 분리·신설 : 건설교통국 →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 사업소 폐지 및 국 신설 : 상하수도사업소→수도국
- 사업소 기구의 과 단위 조직 개편에 따라 삭제 : 도시개발사업소,
시설사업소, 차량관리사업소

□ 붙임 : 부천시 행정기구 조정내역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를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중 “농산지원사업소”를 “시립도서관”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보건소, 사업소중 청소사업소, 녹지공원관리사업소, 시립도서관”을 “보건소”로 하며, 동항제4호중 “건설교통국, 사업소중 상하수도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 시설사업소, 차량관리사업소”를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수도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u></p> <p>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생략)</p> <p>②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p> <p>1. (생략)</p> <p>2. 기획재정위원회 : 공보실, 감사실, 읍부즈만, 기획재정국, 경제문화국, 사업소중 <u>농산지원사업소</u> 소관에 관한 사항</p> <p>3. 행정복지위원회 : 총무국, 복지환경국, <u>보건소</u>, <u>사업소중 청소사업소</u>, <u>녹지공원관리사업소</u>, <u>시립도서관</u> 소관에 관한 사항</p> <p>4. 건설교통위원회 : <u>건설교통국</u>, <u>사업소중 상하수도사업소</u>, <u>도시개발사업소</u>, <u>시설사업소</u>, <u>차량관리사업소</u> 소관에 관한 사항</p>	<p><u>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u></p> <p>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u>시립도서관</u>-----</p> <p>3. ----- ----- <u>보건소</u>----- ----- -----</p> <p>4. ----- <u>도시주택국</u>, <u>건설교통국</u>, <u>수도국</u>----- ----- ----- -----</p>

부천시 행정기구 조정내역

종 전		조 정		조 정 내 역
보좌 기관	공보실 감사실 옴부즈 맨	보좌 기관	공보실 감사실 옴부즈 맨	○ 현행
총무국	총무과 주민자치과 정보통신과 시민봉사과	총무국	총무과 자치행정과 정보통신과 시민봉사과	○ 주민자치과→자치행정과(명칭변경)
기획 재정국	기획예산과 세정과 회계과	기획 재정국	정책기획과 예산법무과 세정과 회계과	○ 기획예산과→정책기획과(명칭변경) ○ 부서신설 : 예산법무과
경제 문화국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지식산업과 문화예술과 농산지원사업소	경제 문화국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문화산업과 문화예술과 농산지원과 시립도서관	○ 지식산업과→문화산업과(명칭변경) ○ 농산지원사업소→농산지원과(所→課개편) ○ 시립도서관 소관 변경 (복지환경국→경제문화국)
복지 환경국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체육청소년과 환경위생과 청소사업소 녹지공원관리사업소 시립도서관	복지 환경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체육청소년과 위생과 환경보전과 청소과 녹지공원과	○ 여성복지과→가정복지과(명칭변경) ○ 환경위생과→위생과(명칭변경) ○ 부서신설 : 환경보전과 ○ 所→課 개편 청소사업소→청소과 녹지공원관리사업소→녹지공원과
건설 교통국	도시과 도로정 교통신 교통시 건설과 도시개발사업소 시설사업소 차량관리사업소 지하철건설사업단	도시 주택국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도시철도 건설공사과	○ 도시과→도시계획과(명칭변경) ○ 所→課 개편 도시개발사업소→도시개발과 지하철건설사업단→도시철도과 시설사업소→시설공사과
		건설 교통국	교통행정과 교통시설과 도로과 차량관리과 재난안전관리과	○ 所→課 개편 지하철건설사업단→도시철도과 차량관리사업소→차량관리과 ○ 국 소관 변경 재난안전관리과(상하수도사업소→건설교통국)
상하수도 사업소	업무과 수도수 정하수 재난안전관리과	수도국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과	○ 부서 명칭 및 소관 변경 업무과→수도행정과 수도과→수도시설과
직속 기관	원미구보건소 소사구보건소 오정구보건소	직속 기관	원미구보건소 소사구보건소 오정구보건소	○ 課 신설 원미구보건소 보건관리과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관련 제417호
의결년월일	2005. 7. 15 (제120회)

제안년월일 : 2005년 7월 15일

제안자 : 김혜성 의원 등 9인

□ 수정이유

-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수정 의결됨에 따라 수정·변경된 행정기구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조정함으로써,
- 상임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각종 의안과 청원심사 등 직무처리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에 따른 상임위원회 소관업무를 조정함.(안 제3조제2항)

《행정복지위원회》

- 국 명칭 변경 : 복지환경국→복지국

《건설교통위원회》

- 국 명칭 변경 : 도시주택국→도시국, 수도국→환경수도국

부천시조례 제 호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2항제3호중 “복지환경국, 보건소”를 “복지국, 보건소”로 하며, 안 제3조제2항제4호중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수도국”을 “도시국, 건설교통국, 환경수도국”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u>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u></p> <p>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생략) ②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p> <p>1. (생략)</p> <p>2. 기획재정위원회 : 공보실, 감사실, 읍부즈만, 기획재정국, 경제문화국, <u>사업소중 농산지원사업소</u> 소관에 관한 사항</p> <p>3. 행정복지위원회 : 총무국, <u>복지환경국, 보건소, 사업소중 청소사업소, 녹지공원관리사업소, 시립도서관</u> 소관에 관한 사항</p> <p>4. 건설교통위원회 : <u>건설교통국, 사업소중 상하수도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 시설사업소, 차량관리사업소</u> 소관에 관한 사항</p>	<p><u>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u></p> <p>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현행과 같음) ②----- -----.</p> <p>1. (현행과 같음)</p> <p>2. ----- ----- ----- -----<u>시립도서관</u> -----</p> <p>3. ----- -- <u>복지환경국, 보건소</u> ----- ----- -----</p> <p>4. ----- <u>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수도국</u>----- ----- ----- -----</p>	<p>(개정안과 같음)</p> <p>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개정안과 같음) ②----- -----.</p> <p>1. (개정안과 같음)</p> <p>2. (개정안과 같음)</p> <p>3. ----- -- <u>복지국, 보건소</u>----- ----- ----- -----</p> <p>4. ----- <u>도시국, 건설교통국, 환경수도국</u>----- ----- ----- -----</p>

[수정안 포함]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를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중 “농산지원사업소”를 “시립도서관”으로 하고, 동항 제3호중 “복지환경국, 보건소, 사업소중 청소사업소, 녹지공원관리사업소, 시립도서관”을 “복지국, 보건소”로 하며, 동항제4호중 “건설교통국, 사업소중 상하수도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 시설사업소, 차량관리사업소”를 “도시국, 건설교통국, 환경수도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u></p> <p>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생략)</p> <p>②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p> <p>1. (생략)</p> <p>2. 기획재정위원회 : 공보실, 감사실, 읍부즈만, 기획재정국, 경제문화국, 사업소중 <u>농산지원사업소</u> 소관에 관한 사항</p> <p>3. 행정복지위원회 : 총무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사업소중 <u>청소사업소, 녹지공원관리사업소, 시립도서관</u> 소관에 관한 사항</p> <p>4. 건설교통위원회 : <u>건설교통국, 사업소중 상하수도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 시설사업소, 차량관리사업소</u> 소관에 관한 사항</p>	<p><u>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u></p> <p>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u>시립도서관</u>-----</p> <p>3. ----- <u>복지국, 보건소</u>----- ----- -----</p> <p>4. ----- <u>도시국, 건설교통국, 환경수도국</u>----- ----- -----</p>